

第11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 運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4月20日(金) 10時03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된案件

-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安載弘議員 外 4人 發議) 1面

(10時03分 開議)

○委員長 洪起瑞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開議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생업(生業) 종사만 하여도 매우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의사일정 수행을 위해 오진 일찍부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은 安載弘議員이 發議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5분 자유 발언제” 조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해박한 지식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고귀한 의견들이 있으시길 기대해 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鐘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 회의는 地方

自治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4월 11일 安載弘議員 外 4인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起瑞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安載弘議員 外 4人 發議)

(10時10分)

○委員長 洪起瑞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을 상정합니다.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본 회

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거나 집행부의 제반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나 대안 제시 등의 광장이 되고 있는 구정질문 제도는 열린 행정과 위민행정의 표상으로 이의 활성화가 적극 요구되고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98년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임시회 때에도 수시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제도는 의원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나 평소 소신편력 등의 폭넓은 의정철학 전개에는 다소 제약이 수반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5분 동안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의2제1항에서 본회의 개의시 의원이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에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제1차 본회의 개의 후 첫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하되 총 소요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며 발언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강제하지는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규칙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과 이와 같이 개정(안)대로 회의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安載弘議員 外 4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運營委員長 洪起瑞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4월 11일자 安載弘議員 外 4人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의 평소 소신이나 의정철학을 부담없이 발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5분 발언제 도입 시행인데 발언분야는 의제와 상관없이 전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시기는 1차 본회의시 의안 상정에 앞서서 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의원님의 신청 순서에 의해서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구 답변은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분 발언제와 관련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처음 도입 시행하였으며 현재 10여 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답변이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필요한 구정질문 제도와는 다르고 또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는 현행 회의규칙 상의 발언제도와는 달리 의제 외 발언이 가능하고 구 공무원의 출석요구나 답변이 필요없이 의원님의 평소 의정철학이나 구정 정책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입연혁을 살펴드리면 '94년 6월 28일에 국회에서 처음 도입 시행하였으며 '97년도 1월 13일에 1차 보안을 거쳐서 '97년 9월 25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입하였습니다. 2001년 3월 12일 현재는 서울시 10여 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의 개정 근거법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분 발언제 검토를 위한 이 제도와 유사한 현행 규칙상의 제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임시회 구정질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회의규칙 중에 명문화한 것은 우리 구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구에서는 임시회 구정질문을 하고는 있습니다라는 규칙상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임시회 구정질

문 제도의 내용은 제1항에서는 정례회시 3일 이내의 구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임시회의시 의원님이 희망할 시에는 수시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는 질문 신청시에 질문의원의 질문요지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4항에서는 답변은 정례회시에는 구청장이 임시회의시에는 관계국장이 폐회일에 답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현행 회의규칙상 발언규정과 5분 발언제의 차이점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점은 발언을 의원님이 신청하거나 의장이 허가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현재 규칙상의 발언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임시회 구정질문, 의사진행발언, 안건심사시에 심사발언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제를 대비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제 외 발언은 안건심사 발언시에는 안건 외 발언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답변은 5분 발언제 필요없고 의사진행발언에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 제출은 5분 발언제 필요없고 의안심사발언에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석요구는 임시회 구정질문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문별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5분 발언제를 하기 위한 조문은 제32조의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2,3,4항이 되겠습니다. 마는 기타 조문은 이 5분 발언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조문과 서로 내용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30조제1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이나 하면 제30조제1항은 현재 의제 외 발언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제는 의제 외 발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조문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제 시에는 제30조제1항 의제 외 발언금지 규정을 예외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발언제도는 답변이 필요치 않은 관계로

현행 제도나 관행을 의식함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여 기발한 정책 아이디어 등도 발표되는 광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용할 경우에 언론이나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발언도 배제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운용에 참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洪起瑞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鐘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마치고 散會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時15分 散會)

○出席委員 7人

洪起瑞 鄭泰淳 安載弘 李東奎
金福同 李炯述 宣相善

○出席議員

安載弘

○出席專門委員

蔣昭秀